

[]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합병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합병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해상교통안전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안전진단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						